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요구의건에대한의견서

의 안 번 호	77

산업건설위원회

1996. 6. 17

□ 신청현황

- ㅇ 시 설 명 : 폐기물처리시설(특정폐기물)
- ㅇ 위 치 : 대산읍 대죽리 753번지
- ㅇ 면 적 : 2,900㎡
- ㅇ 시설용량 : 450Kg/hr

□ 위원회 의견

본 의견 요구의건은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동건은 기존공장내에 설치하고 또 본시설이 설치되어야 공장의 가동이 가능한것으로 판단되는등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다음사항에 대하여 특별배려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동의함.

- 동시설의 완벽한 관련법규 준수설치 요망.
- 동시설 설치후 타 지역으로 부터 폐기물의 유입 절대차단
- 앞으로도 집행부의 철저한 감시감독

대산항 일반부두조기건설에 대한 건의서

지난 4월 15일 대산지방해운항만청의 개청은 서해한시대의 개막과 낙후된 이 지역의 발전을 바라는 15만 서산시민은 물론 200만 충남도민과 해운항만관계자, 기업인등 충청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동안 대산지방해운항만청의 개청에 힘써주신 항만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대산지방해운항만청 개청과 더불어 이 지역에서 항만청에 기대하고 있는 대산항 일반부두 조기건설과 대산지방해운항만청 관할구역의 확대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첫째, 대산항의 일반부두 건설을 앞당겨 주실것을 바랍니다.

현재 대산항에는 콘테이너 및 일반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없어 대산의 유화 3사(현대석유화학, 현대정유, 삼성종합화학)등의 수출입 물동량 "'96년 추정 콘테이너 3만TEU, 일반화물 20만톤"을 부산항 및 인천항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 육상운송으로 인한 전국적인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로인한 년간 134억원의 물류비용과 납품기한 지연으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정부의 공업화시책 추진으로 앞으로 대산항을 이용할 충남서북부 지역에는 대죽공단 63만평, 석문공단 358만평, 인주공단 103만평, 대호지구 공유수면매립 87만평등 약 620만평의 대규모 공단조성 및 2001년까지 국가, 지방공단 1,538만평 조성계획과 지방중소기업등 총 2,500만평의 공장에서 년간 3천만톤이 넘는 화물이 발생할 것으로 보아, 이의 처리에 따른 일반 부두건설이 시급한 현실로 대산항의 일반 부두건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계획을 앞당겨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대산지방해운항만청의 관할구역을 확대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운항만청이 개청되고 그 관할구역을 정함에 있어, 당진군 송산면과 송악면 이남에서 부터 보령시까지의 해상과 충남서북부지역 일부 시.군만을 관할할수 있도록 규정한것은 신설청으로서 업무수용 능력등 여러가지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사료되나,

청사준공 및 대산항 부두건설사업의 착수와 더불어 충청남북도와 대전광역시 전지역을 관할하도록 조정하여 전국의 다른 지방해운항만청과의 형평을 유지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대산지방해운항만청이 소기의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996년 6월 28일

서산시의회 의장 김 재 경